

인권보호와 언론의 책임

한국 홍보연구소 대표
오소백

언론인은 양식을 바탕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부단히 드높여야 한다. 이것만이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1. 머 리 말

밟는 강자, 밟히는 약자의 관계 속에서 인권의 사상은 굳건히 자라왔다. 아마도 자유에 대한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겼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본적 인권의 사상이 법체계 내에 확립되기에 이른 것은 근대국가에 와서였다. 인권사상이 확립되기까지에는 인류의 오랜 고난의 고정이 깔려있다.

인권은 「사람다운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권리가 곧 인권이기도 하다. 다만 법령에 의해서 국민이 갖는 권리의 전부를 인권 또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그 중 특히 기본적인 것, 이를테면 그것 없이는 거의 인간가치를 지탱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한다.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는 바로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국민의 권리보장이 불충분했던 나라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권리나 자유를 헌법에 밝히는 일이 있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개인은 생명·자유·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 권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러한 권리들은 종교의 자유·언론의 자유·빈곤인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지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권리의 남용을 삼가고 공익을 위해 이용할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점은 상대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 세계인권선언 제 29 조 제 2 항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조항은 특히 권리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심분 인정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특별히 제정된 법률은 도덕과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안녕을 유지하는데...』

이처럼 자유와 권리에겐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정도로 자기의 권리를 갖는다는 건 평범한 진리이기도 하다. 정직한 사람에겐 법이 필요없다는 말도 있다. 그러기에 공평하고 선량한 것이 법중의 법이라고 한다. 불공평하고 선량하지 않을 때 그 형평을 위해 법이 등장된다.

우리나라의 신헌법에는 과거 국민의 기본적 보장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있다. 구속적부심부활 · 피고인의 무죄추정 규정 연좌제 폐지 규정 ·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 20 조는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 언론 · 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입법화 조치의 과정에서 언론이 개인의 권리를 무단히 침해하므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언론의 보도실태

한국 언론은 근대에 이르러 사건보도를 할 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윤노파 살해사건, 상은지점 갱사건, 화장품상 여인 살해사건, 여대생살해사건 등에서 인권침해의 사실이 여러모로 드러났다. 이 중 상은지점 갱사건 만은 66년에 일어났었다. 윤노파 살해사건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미디어들은 죽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심지어는 그녀의 옛 애인과 찍은 사진까지 크게 실었다. 이런 사진은 독자들에게 흥미거리가 되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공익이나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은행 갱사건의 경우 수사당국은 무려 1천여명의 용의자를 연행·조사한 바 있다. 이때 어떤 신문은 용의자 14명의 주소·성명 및 사진까지 게재한 바 있다. 몇 년후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 진범이 잡히므로 1천명의 용의자는 혐의를 벗어났다. 이 경우 이름·주소·사진까지 신문에 실렸던 억울한 용의자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장품상 여인살해사건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성관계가 있는 것처럼 수첩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의 어린 딸의 이름·학교 등의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후에 진범이 잡히므로 사건과 개인의 사생활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볼 때 사자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사라졌다 해도 신문은 유가족들의 사생활이나 신원을 공개하므로써 그들에게 겹친 고통을 안겨 준 일밖에 한 일이 없다. 이 모든 경우,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가족이나 주변인물들의 신원과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건 그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준다. 언론이 사건과 관계없는 선의의 제 3자를 들먹거리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여대생살해사건의 경우에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장모군은 4개월 뒤에 혐의가 없어졌다. 검찰에 의해 장모군이 진범이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장군이 범인으로 몰려있었다. 장군이 당한 명예훼손·인권침해는 돈으로도 회복 안되고 신문에 사죄광고를 낸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에 있어 경찰의 잘못된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진범처럼 거의 단정해서 보도한 언론의 자세도 경솔했다. 신문·방송을 통해 몇 백만 독자와 청취자들에게 알려진 장군의 이미지는 말끔히 가시기 어려울 것이다. 『

육체적 상처는 날이 가면 아물지만 펜에 상처받은 자국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언론에 의해 받은 명예훼손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다는 걸 뜻한다. 몇몇 큰 사건에서 나돌고 있는 「강요된 자백」이며 「고문」 따위의 수사방법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진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위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대한 사건일수록 국민적 관심은 높다. 따라서 당국은 수사상황을 중간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신문이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때에 신문은 피의사실에 대해 「사전누설」이라는 취재원의 접근 금지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진전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대중의 관심(알권리)과의 갈등 속에서 매우 난처해진다. 독자는 알고 싶어하고, 수사당국은 기자의 접근을 막는다. 이런 경우 신문이 주의해야 할 것은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증거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판청구 전에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의 참뜻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형벌로써 교화시키는 외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여년 전에 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이미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공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처럼 법이나 윤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실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문제가 있다.

3.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중은 알 권리가 있고 매스미디어는 알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신문의 무책임한 보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알릴 권리를 주장하는 신문사의 옹색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대중은 알 권리를 통해 판단의 자료를 얻는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대중은 알 권리를 강하게 내세운다. 알 권리가 없다면 대중의 권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대중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알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당하면서도 그 책임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월버슈람은 알권리와 알릴 권리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대중의 알 권리를 대표해서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권리의 한계가 필요하다. 가령 알 권리가 옛부터 귀중히 여겨지고 있는 다른 권리와 충돌했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개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는 권리, 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보를 내주지 않고 있는 권리라든가 또 미디어가 자기의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로막는 권리 등 이런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수행의 단판의 한계를 내려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은 알 권리의 범위에 대해 분별력 있는 통찰력과 보도됨으로써 발생할 결과에 대한 고찰, 그리고 공평한 보도의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현대 언론의 특징이다. 대중에게 알릴 책임이 바로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므로 언론이 무조건 자유로와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일 뿐이다.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인 것은 틀림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익과 정비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알 권리를 채워준다는 미명하에 사생활까지 드러내게 해서는 안된다. 한 법조계 사람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법정이외의 어떤 자리도 재판할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재판」, 「수사재판」이란 신어가 나오게 된 것은 인권옹호가 소외되고 있다는 결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쪽에서는 언론의 자유야말로 진실을 아는 길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신문의 포력」, 「언론의 남용」이라는 반사회적 영향을 강조한다.

어느 쪽이건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견해나 이해관계가 다른 데서 일어난다. 그러나 이 대립한 과제의 공평한 결정은 공공의 복지증진,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한계에서 선을 긋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그 판정의 기초를 이루는 기준은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사회적 이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신문이 특히 주장해 온 절대적인 언론 자유의 원칙이 현대적 과제로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영화·방송과 같은 새로운 매스미디어가 발달해 온 것과 기사내용이 반사회적 영향을 일으켰을 경우 이를 국가의 책임에 돌릴 수가 없게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언론자유의 지나친 존중과 주장은 자유와 방종을 뒤섞어 버렸다. 언론의 자유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관념은 부정되어 왔던 것이다.

여태까지의 언론자유 원칙에서 미디어의 도덕적 책임이라거나 공익의 옹호같은 생각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자유는 늘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문에 취재나 세금, 또는 운송 등에 관해 특권적 지위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혜는 신문이 민주정치의 사회적 사명을 다할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2대 목적의 (공공복지의 실현과 시민적 자유의 보장) 한계 내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 및 논평의 자유와 사회적 복지의 실현에 모순하는 범죄 · 청소년비행 행위의 조장 · 미풍양속 등 반사회적 영향과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모순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상반되는 결과가 생겨나고 있다. 이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가 정부측이나 독자대중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나 언론의 무제한 자유를 인정하려 했던 자유주의 원칙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하나의 새로운 통일적 이론으로 발전시킨 계기는 미국의 허친스 위원회와 영국의 신문에 대한 왕립위원회였다. 이들 위원회가 매스미디어의 반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로 제시한 것은 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폭력, 외설, 소년법위반, 허위 또는 과대기사(광고) 등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그 판가름이나 기준에 명확한 한계선을 긋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논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인데 대해 윤리는 인간의 내심에 관한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진 것만으로써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지만 꼭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법적 의무의 이행에는 권리적인 상대쪽이 대응한다. 그러나 윤리상의 의무는 편무적이며, 의무이행의 상대방으로써의 특징인이 없다. 굳이 말한다면 상징적인 양심, 또는 신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선악을 판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행위의 주체는 개인적 자아이므로 윤리의 생활은 개인을 본위로 삼아야 한다. 양심 · 책임 · 의무 등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개인이 본래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의 보도행위가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라도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문제는 중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의 철학, 사명의식에서 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단지 상층부의 마음가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직업의식으로서 언론인 전체에 스며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세는 공익에 대한 투철한 자세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처음 기자가 되는 젊은이에게 선배들이 충고해주는 말이 있다.

『자네 뒤에는 늘 자네를 상대로 고소할 사람이 10 명쯤은 따르고 있다는 걸 명심해 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드로디 톰슨은 다음과 같이 보도기자의 임무를 날카롭게 설명했다.

『보도기자는 집권정부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갖고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자가 타개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진실의 노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기자가 만일에 진리에 관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규제될 것이다. 기자가 보도한 여러 사실이 만약에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는 방향의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책을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이끌는지도 모른다. 기자의 가치는 그가 어느 정부의 고용인이 아니고 진실의 보도자요 입증자라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자 애쓰는 정도에 비례하여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의 사명완수는 직업적인 의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애국적인 의무인 것이다. 여러 사실을 애써 수집함은 지식을 얻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없이 출판의 자유권이란 공허하다. 그러나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분별한 사실에의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무책임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해 법률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밝힌 뚜렷한 예가 있다(커넥티컷주 입법부 통과 57. 5. 29).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정부기관의 모든 회합(단, 비밀회의는 제외)을 일반에 공개하되 공식적인 기록의 발표는 각 멤버의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주정부의 모든 기록(문서)을 일반에게 공개하되 다만 이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정부의 재정적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그 접근거절이 「어느 개인의 인격 또는 명예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당해 문서의 보관자가 단정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공공의 안전」, 「공공의 이익」, 「개인의 명예」를

생각한 데 있다. 무턱대고 문서열람의 권리(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은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진실이 아닌걸 진실한 것으로 보이게끔 보도했다면 서슴없이 해명을 하거나 정정기사를 내야 한다.

4. 맺는 말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을 몰아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80 년에 엄청난 허위 기사를 실어 대신문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여기서 제니 · 쿠크가 쓴 「지미의 세계」의 기사는 폴리처신문상을 노려 꾸민 가짜 기사였다. 쿠크는 폴리처상을 탔다. 그러나 가짜 기사임이 드러나자 상을 반환하고 사표를 냈다. 「포스트」 신문은 이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장문의 조사보고서를 자기신문에 전문 실었다.

「포스트」 신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엄청난 거짓기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할 독자들의 반응도 신문 1 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독자의 알 권리에 대한 오도를 벌거숭이로 비판받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포스트」 신문의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 문제의 기자 쿠크의 다음과 같은 사직서내용도 공개했다.

『「지미의 세계」는 허구였다. 헤로인에 중독된 8 살짜리 소년을 만난 적도, 인터뷰한 적도 없다. 1980 년 9 월 28 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나의 기사는 순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크게 후회한다. 내가 몸담고 있던 「포스트」지와 언론계 폴리처상 심사위원회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오늘 진실 앞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역시 세계적 대신문다운 책임감과 아량이 보인다. 북구의 일부 신문은 정정기사를 자진해서 다루되, 오보를 했던 크기로 다룬다. 독자대중에 대한 그들의 신문윤리는 이래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신문인은 선의로써 과오를 저지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정확한 정보를 믿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고 사실을 기술하거나 신빙할 만한 소스에서 나오지 않은 주장을 경솔히 보도하는 경우엔 직무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벨기에 신문의 윤리강령의 이 글은 매우 함축성이 짙어 보인다. 스웨덴 신문협회의 발행규칙도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명예와 위업을 지키려는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는 한,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논평은 피해야 한다. 시인할 만한 답변과 정정에 앞서 보도된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지면을 할애하여야 한다. 범죄의 상세한 서술묘사는 피해야 한다』

스웨덴의 언론이 이처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언론은 어딘지 웅졸한 것 같기만 하다. 또한 '세클라멘트 비'지의 편집방침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부인의 이름과 명예에 대하여는 신중치 않으면 안된다. 불행한 여성의 기사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자가 그의 순결에 대해서 범한 이외의 사항은 하등의 범죄를 짓지 않는 한 보도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치유된다. 그러나 한번 손상된 개인의 평판만은 그렇지 않다. 상대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개인의 명예에 관한 기사일 경우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고 절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의 명예가 좌우될 때에는 이런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여자가 사소한 과실을 했다 해도 관용적 태도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무조건 보도하는 신문의 태도는 그녀의 생애에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과 관련된 여자의 사생활이 신문 등에 실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여자를 자포자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기사도 한 여성의 생애를 망쳐도 좋으리만치 가치있는 기사는 없다. 이는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어휘에 있어서도 사고에 있어서도 신문은 품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속한 어휘나 시사적인 표현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인들은 민주사회의 온갖 시민의 생활영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또 기자가 보도하는 사건내용이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나쁜 의도를 갖고 다룰 때에는 공연히 선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기자는 충분히 머리 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언론인의 직업은 존경해야 할 사업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평화를 전쟁으로, 즐거움을 슬픔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애국적인 것을 반역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직업이라는 걸 뚜렷이 알아두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보면 언론사업은 장래에도 길이 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 사고를 전달하는 작업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언론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공익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인권옹호의 파수역인 언론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반공익적인 것이 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결국 인권을 언론 스스로가 보장하자는데 있다. 언론의 자율적 규제는 타율적인 제재를 막는 최선의 길인지도 모른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무를 지지않는 미디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양식을 바탕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부단히 드높여야 한다. 이것만이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 서울대 사범대학 수료, 고려대 교육대학원

□ 서울신문 사회부장, 한국일보 사회부장, 한양대, 성균관대 강사

□ 저술 : 「기자가 되려면」 「매스컴 문장요화」 등

□ 현재 한국홍보연구소 소장